탄 원 서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관련 형사사건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 부 귀중
사건번호	2026 고합 431
피고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 1 차관 · 사건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관련 공소사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관련 혐의 (보도 기준)
탄원 취지	개별 공소사실의 엄격한 심리와 증명 부족 부분의 무죄 요청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김오진 피고인의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사건에서 국가 예산의 적법성과 공문서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 그리고 피고인 한 사람의 책임을 정확한 증거로 가리는 일이 모두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공적 예산이 잘못 사용되거나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면 그 책임은 엄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에 실제로 누가 무엇을 알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까지 세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김오진 피고인은 이후 국토교통부 제 1 차관을 지냈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2022 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서의 직무와 행위입니다. 저는 관련 공문 원본이나 공판조서, 별건 판결문 전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공개 보도의 내용과 피고인 측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재판부께서 사건 당시의 권한과 구체적인 행위, 문서 작성자의 인식 및 그 결과를 구분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사건 당시의 직무와 이후 국토교통부 경력을 혼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오진 피고인은 관저 이전 사업이 진행되던 2022 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서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도됐으며, 이후 국토교통부 제 1 차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피고인의 전직 직함을 표시하는 것은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이지,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의 예산 전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기관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2 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담당한 관저 관리·협의·공문 시행 업무의 법적 근거와 실제 직무 범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기획재정부의 별도 예산 권한, 대통령비서실 내부의 보고·결재 구조를 먼저 구별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의 범위가 확인되어야 그 행사에 남용이 있었는지도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예산 부족, 공사비 확보, 전용 승인 및 집행의 단계를 구분해 주십시오

특검은 2022 년 관저 공사 과정에서 당초 준비된 예산과 업체의 견적 사이에 차이가 생기자, 관저 관련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약 20 억 9 천만 원을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실무자의 반대 및 대통령실의 압박 의혹도 나옵니다. 이는 아직 이 사건에서 확정된 유죄 사실이 아니라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공사의 필요성을 논의한 단계, 비용 지급 방침을 정한 단계, 예산 전용을 행정안전부가 신청한 단계, 기획재정부가 승인 여부를 검토한 단계, 실제로 자금이 지출된 단계를 서로 분리해야 합니다. 김오진 피고인이 언제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각 단계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문서를 만들었는지, 타 기관의 권한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관저 공사의 관리 주체와 예산 사용의 법률상 근거를 따로 판단해 주십시오

2026 년 7 월 2 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관저로 용도가 바뀐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의 공사 단계 관리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관리 주체가 행정안전부인지 대통령비서실인지, 공사에 관한 예산을 어느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실질적인 재정법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022 년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국가재정법 제 45 조·제 46 조, 예산 편성의 세부 목적, 관련 업무 분장과 승인 위임 범위, 실제 전용 신청서와 결재 문서를 대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전용 과정에 법령상 문제가 있더라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개인에게 형법상 직권남용이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4. 직권남용 혐의는 상대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와 인과관계를 특정해 주십시오

대법원 2018 도 2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서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는지, 그 결과 다른 사람이 현실적으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구체적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 등을 구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오진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전달한 요청이나 지시가 무엇인지, 그 상대방이 행정안전부 또는 기획재정부의 어떤 업무 담당자였는지, 본래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심사·결재를 포기했는지, 실제로 어떤 문서나 승인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기관 간 협조 요청과 사업 필요성에 관한 설명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권남용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인정하려면, 그 결과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같은 사업에 여러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공동가담은 직책상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오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지시를 전달했는지, 스스로 위법한 결정을 주도했는지, 다른 피고인과 어떤 의사연락 및 역할 분담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대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협조 요청 공문은 전체 내용, 작성 경위와 허위성 인식을 함께 살펴 주십시오

공개된 기소 및 첫 공판 보도에 따르면, 김오진 피고인에게는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관저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 업무동 공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시행한 행위와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문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가 허위가 아니며 일부 표현만 분리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측 항변으로 소개된 것이며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께서는 문제 된 문서의 원문 전체, 작성 목적, 업무동 관련 실제 공사 계획·현황, 문서의 결재선과 작성자, 수정 이력, 첨부 자료, 수신 기관, 시행 시점 및 후속 집행을 모두 대조해 주십시오. 문서의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인식 아래 허위 내용을 작성·시행한 것인지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 227 조의 적용에서는 직무에 관한 공문서의 허위 작성과 행사 목적, 허위성 및 그에 관한 인식을 확인해야 하고, 제 229 조의 행사 혐의는 실제 공문서의 행사 여부와 방식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 내용이 부정확했다는 평가, 고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했다는 법률상 판단을 구별해 주십시오.

6. 불리한 증거도 빠짐없이 심리하되, 각각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범위에서 평가해 주십시오

특검은 관계 공무원의 반대와 부처 간 압박, 예산이 실제로 전용·집행된 과정, 업무동 공사 필요성을 기재한 협조 요청 공문의 허위성 의혹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국가 예산의 적법성과 공문서 신뢰를 위해 엄정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의혹을 일률적으로 행정적 착오라고 축소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반대 의견이 김오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그 당시 허용 가능한 예산 전용 절차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관계 기관의 승인 또는 거부 과정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공문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증거로 연결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함께 기재된 다른 피고인의 발언과 인사 조치가 피고인의 인식·의사연락 없이 당연히 이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별도 관저 공사 사건의 2026 년 11 월 20 일 판결과 이 사건을 혼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오진 피고인에 관하여 2026 년 11 월 20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 부는 별도의 관저 공사 관련 사건 1 심에서 징역 1 년 6 개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 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었다는 점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그 판결은 현재 탄원드리는 형사합의 36 부의 2026 고합 431 예산 전용 사건 판결이 아닙니다.

양 사건이 사실관계 일부를 공유한다면 이미 심리된 증거나 법원의 판단이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법률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별건 판결의 존재만으로 예산 전용의 개별 공소사실, 이 사건의 공문, 상대 공무원의 의무 없는 행위 및 그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증명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건 판결의 이유 전문을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 사실인정의 범위를 추정하지 않으며,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처럼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8. 업무상 협의와 위법한 지시를 구분하여 주십시오

공공시설 이전과 보수에는 유관기관의 조정과 신속한 실무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보안성 또는 정책적 중요성은 국가재정법이나 공문서 관련 형법 규정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 점을 전제로, 피고인이 요구한 구체적 조치가 법령상 허용되는 협조 요청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정당한 심사를 회피하게 한 지시였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가 갖는 영향력이나 사업의 정치적 논란만으로 위법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명목상 협의였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반대와 독립 판단을 실질적으로 봉쇄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역시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판단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무리한 면책도 무리한 확대책임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9. 형사책임의 최종 판단은 증거와 구성요건별로 내려 주십시오

2026 년 10 월 16 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사건의 김오진 피고인에게 징역 3 년 6 개월을 구형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구형은 검사의 요청이며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 307 조에 따라 예산 전용 관련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관련 공소사실은 각각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구성요건 또는 공소사실에는 무죄가 선고되기를 바랍니다 . 반면 일부 사실이 증명되어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을 무리하게 부정해 달라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직무 범위, 행위의 단계, 결과의 중대성, 본인이 인식하고 선택한 범위 및 법정에서 확인된 정상을 고려하여 비례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확인되지 않은 인품이나 건강, 가족 사정으로 선처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정이 있다면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살펴 주시고, 그 사람이 실제로 행사한 권한과 선택한 행위에 맞게 책임을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형사판결인 만큼, 판단 과정도 공정하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별건의 인상이 아닌 이 사건의 증거로 판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부께.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준법의 기준은 공직자에게도 엄격해야 합니다 . 그러나 공직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다는 이유로, 이미 다른 재판에서 판단받은 사실이나 이후의 직함이 이번 사건의 유무죄를 미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예산의 이동, 협조 요청 공문의 실제 내용, 작성 당시의 인식, 상대 공무원에게 발생한 결과를 각각 확인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허위와 위법이 증명된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끝내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무죄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 부디 김오진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실만으로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2026 년 _____월 _____일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선택) _____

주소 _____

연락처(선택) 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 부 귀중